

#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2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8. 6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제안이유

-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
-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는 부동산중개업법률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허가관청(시장·군수)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.

## 주요골자

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.

## 근거법령

부동산중개업법률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

##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조례제1542호  
1987. 5. 15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동산중개업법 관련법규

### □ 법률제39조(과태료) → 구법률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서울특별시.직할시.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□ 법률제39조(과태료) → 개정법률

-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, 제1항제1호.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·징수한다.

### □ 동법시행령제45조(과태료의 부과.징수절차)

- ①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